

2021-2 학부 중간·기말고사 실시 안내



2021.10. 교무처 학사팀

중간·기말고사 시행 및 응시방법과 관련하여 안내드립니다.
안전하고 공정한 시험이 치러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목차〉

1. 실시기간 --- p.1
 2. 실시방법 --- p.1
 3. 대면시험 방역관리 지침(상세) --- p.3
 4. 등교학생의 원격시험 지원사항 --- p.5
 5. 추가시험 신청 및 승인 안내 --- p.6
 6. 문의처 --- p.7
- [첨부] 추가시험 신청 서식 --- p.8

1. 실시 기간

- 중간·기말고사는 해당 주차의 정규 수업시간 중에 실시하는 것이 원칙이나, 대면시험 시 학생 분산을 위해 시험 날짜와 시간이 유연하게 운영될 수 있습니다.
- 시험이 실시되지 않는 수업 요일에는 강의를 정상 진행됩니다.

2. 실시 방법

-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까지는 교과목 특성에 따라 대면 또는 원격으로 실시하며, 4단계는 승인받은 과목만 대면시험 실시 가능함.

사회적거리두기	대면시험 시행 기준	실내 수용 기준
1~2단계	교과목 특성에 따라 대면시험 실시 가능	▪ 강의실 수용인원의 1/2 이하 수용 ▪ 한 칸 띄어 앉기
3단계		▪ 강의실 당 학생 30명 이하 수용 ▪ 두 칸 띄어 앉기
4단계	승인받은 과목 실시 가능	

- 정기시험에 응시불가 사유가 있는 학생은 **추가시험**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학사팀 승인 후 담당 교강사에게 제출, 상세 사항은 p.6 참조). 단, 최종성적은 B+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교육실습생 제외)

시험유형	유의사항
대면시험	① 원격수업의 대면시험 진행 여부 및 시험 장소는 교과목별로 별도 안내함 ② 코로나19 관련 신고 대상자*는 대면시험에 응시할 수 없으며, 대학에 신고한 후 추가시험을 신청하여 인정 점수를 받도록 함 (*p.4 참조) ③ 등교 시 KF-80 이상의 마스크를 의무 착용하여야 하며, 마스크를 내리거나 벗지 않아야 함. 교내에서는 시험장 및 지정장소 외에서 식음료 섭취를 금함. ④ 건물별 주 출입구 입장 시 QR체크인 후 입장. ⑤ 입·퇴실 시에는 강의실에 비치된 알코올 소독제를 이용하여 손을 소독하여야 함. ⑥ 시험이 종료되면 감독관의 안내에 따라 순차 퇴실하고, 다음 시험일정이 없으면 교내에 머무르지 않고 바로 귀가함 ※ 대면시험 실시 강좌 중 임의 선정하여 방역지침 준수 여부 현장점검 시행 예정
원격시험	① 원격시험 응시 방법 및 유의사항 확인★ ▶다음의 행동은 시험 진행 및 제출에 오류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삼가함 1) 강의 영상을 함께 실행하는 경우 2) 다른 자료를 새 창으로 실행하여 함께 확인하는 경우 3) 다른 강의실을 새 창으로 열어서 함께 확인하는 경우 4) 다른 브라우저를 함께 실행하여 진행하는 경우 5) 다른 기기로 함께 접속하여 중복 로그인을 한 상태에서 동시에 시험을 진행하는 경우 (※시험감독용 ZOOM 접속을 위한 다른 기기 로그인은 예외) 6) 시험 응시 진행 중인 컴퓨터에서 다른 프로그램을 함께 실행하는 경우 ▶온라인 시험은 모바일 기기보다는 PC에서 응시하는 것을 권장함 시험 응시 전에 컴퓨터에서 실행한 다른 프로그램은 모두 종료해주시고, 가급적 컴퓨터를 재부팅한 후에 스노우보드 강의실 웹페이지만 접속한 상태에서 진행해주시기 바랍니다.(시험 감독을 위한 ZOOM 프로그램 실행은 허용) ▶안정적인 네트워크 접속환경이 유지될 수 있는 상태에서 응시 요망 사용하는 PC에서 인터넷 접속이 불안정한 경우 시험 진행 중간에 인터넷 연결이 끊길 위험이 있습니다. 무선 네트워크로 접속하는 경우 공용 Wi-fi보다는 전용 네트워크 회선을 사용할 수 있는 환경에서 접속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테더링, 핫스팟을 통한 연결 등은 피해주시기 바랍니다. ② 담당 교원이 제공하는 시험실시 관련 안내를 숙독하고, 수강중인 과목에서 실제 시험 전에 모의시험(예행연습) 실시하는 경우 반드시 참여하여 준비함 ③ 부정행위 금지조항 확인 다음의 사항은 부정행위로 간주하며, 사후 적발 시 0점 처리될 수 있음 1. 시험 진행 중 수강생 간에 연락을 취하는 경우 2. 다른 수강생을 포함한 제3자와 협력을 하거나 조력을 받는 경우 (인터넷 사이트 등의 질의/응답 시스템 사용도 제3자 조력으로 간주함) 3. 중복 로그인을 시도하는 경우 4. 타인이 대리 시험을 진행하는 경우 또한, 시험문제 유출을 절대 금합니다.(촬영, 복사 등 어떤 형태로든 게재 X)

※시험 부정행위 제보: 해당 과목 교·강사 또는 학사팀·기초교양대학 교학팀 담당 직원

3. 대면시험 방역관리 지침(상세)

□ 대면시험일 전후 감독자·응시자 유의사항

시기	교강사/학과	학생
[교강사, 학생 공통 준수사항] - 시험일 전후로 개인 방역수칙을 더욱 철저히 준수하고, 불필요한 외출 자제 - 신고 대상일 시 반드시 대학본부에 신고하고 등교 중지함 - KF80 이상 마스크 착용, 시험장 내 대화 자제 및 취식(음료·식사) 금지		
시험 전	-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별 실내 수용 기준에 따른 시험장소 예약 및 현장점검 - 시험장 방역관리 물품 파악 및 확보 - 수강생 대상 공지 - 개인 방역수칙 준수 및 건강관리 당부 - KF80 이상 마스크 의무 착용 - 본인 유고 발생 시 대처계획 사전 수립	- 신고 대상일 시 대학본부에 신고하고 등교 중지함 - 결시해야 할 시 추가시험 신청 가능 - 해당 기간 출석 인정 - KF80 이상 마스크 준비
시험 당일	- 입실 학생에게 방역지침 고지 및 시험장 방역관리 준수 여부 지속 감시 - 시험장 환기 지속 시행 - 시험지 배부 및 수거 시 일회용 장갑 착용하고, 전후과정에 손 소독	- 시험장 입·퇴실 시마다 손 소독 시험장 내에서는 교강사의 방역관리 지시를 절대 준수 - 시험 종료 후에는 교내에 머무르거나 교내 외 모임을 하지 않고 바로 귀가
	〈방역과 관련하여 퇴실 조치될 수 있는 사항〉 - KF80 이상 등급 마스크 미착용자 - 출입 체크 및 발열 점검에 응하지 않은 자 - 시험장 안에서 마스크를 내려쓰거나 벗은 경우 - 시험장 안에서 다른 학생과 거리를 두지 않고 대화하는 경우 - 시험장 안에서 음료를 마시거나 식사를 하는 경우 - 기타 본교의 방역관리 지침을 어겼거나 감독관 지시에 불응하는 경우 ※ 방역지침 준수 여부 현장점검 시행 예정(임의선정),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시험 후	‘시험장 관리대장’ 설문에 응답하여야 함 (시험 종료 후 2일 이내) - 수거한 시험지(답안지)는 되도록 24시간 이후에 개봉하여 채점 - 추가시험이 필요한 학생에 대한 후속 조치	신고 대상일 시 대학본부에 즉시 신고

□ 코로나19 신고대상자 대학본부 신고 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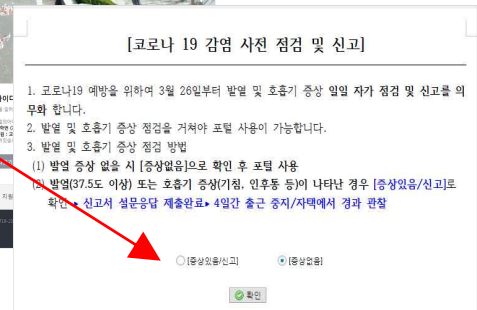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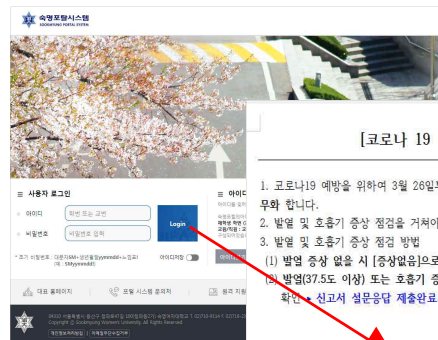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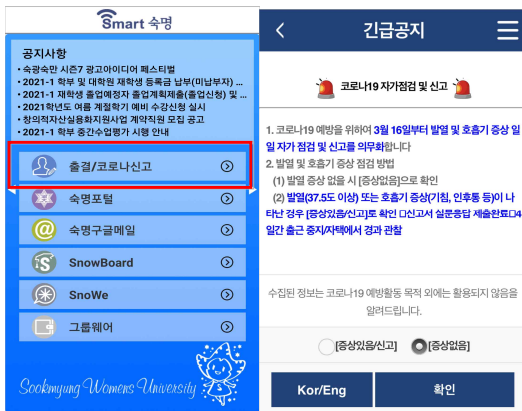
코로나19관련 신고 대상 및 조치 안내

숙명여자대학교 모든 구성원은 아래와 같은 증상이 있는 경우 대학에 신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 확산 방지 및 예방을 위해 교내외 모든 관계자분들께 협조와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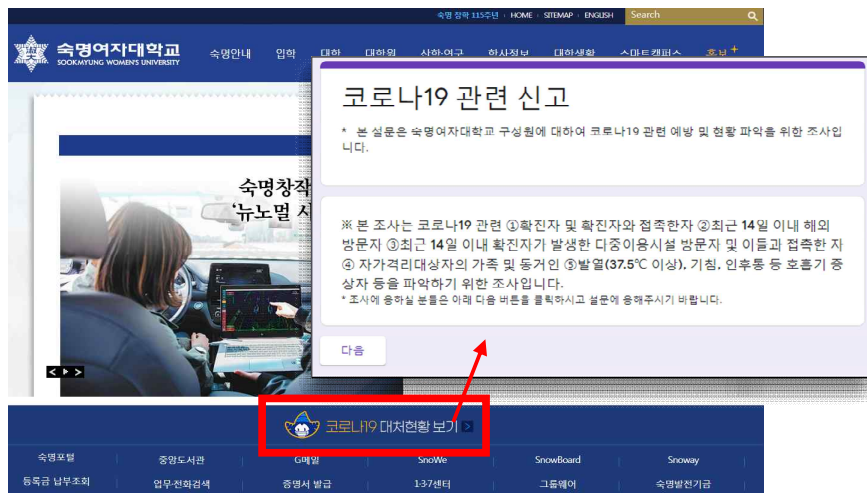
신고 대상 (2021.07.07. 기준)	조치 안내 ※ 해당기간 출석/출근 인정
확진자	격리해제 시까지 등교 및 출근 중지
확진자와 접촉한 자	접촉 후 14일간 등교 및 출근 중지
최근 14일 이내 해외 방문자	입국 후 14일간 등교 및 출근 중지
최근 14일 이내 확진자가 발생한 다중이용시설 방문자 중 검사 대상자	검사결과 음성 판정 시까지 등교 및 출근 중지
자가격리대상자의 가족 및 동거인	자가격리자의 격리해제일까지 등교 및 출근 중지 *자가격리 동거인과 접촉없이 별도 생활 가능한 경우 등교/출근 가능
동거인이 진단검사 실시한 경우 (동거인의 의심증상, 검사대상통보 등)	동거인의 검사결과 음성 판정 시까지 등교 및 출근 중지
발열(37.5°C 이상) 등 의심증상 발현 시	검사결과 음성 판정 시까지 등교 및 출근 중지



스마트숙명 앱 > 코로나신고 또는 숙명포털 로그인 첫 페이지



대학 홈페이지(<http://www.sookmyung.ac.kr>) > 코로나19대처현황 > 대학에신고하기



4. 등교학생의 원격수업(시험) 지원사항

□ 대면수업(시험)으로 등교한 학생의 원격시험 응시 장소 지원

- 2021.12.21.(화)까지 사용. 주말 제외 오전 9시~오후 5시
- 응시에 필요한 물품은 자체 준비해야 함: 노트북, 충전기, 전원연장선(멀티탭), 거치대 등

구분	호실	수용인원	사용불가 기간 (입시)
데스크탑 PC실	명신관 106	43명	10/15(금), 11/19(금), 11/24(수)~26(금), 12/3(금)
	명신관 107	29명	
	사회교육관 B113B	42명	
	프라임관 B203	30명	
	백주년기념관 504	51명	10/15(금), 11/19(금), 11/24(수)~26(금)
개인이 지참한 노트북 전용 (책상에 콘센트有)	명신관 701	50명	10/15(금), 11/19(금), 11/24(수)~26(금), 12/3(금)
	명신관 702	50명	
그 외	중앙도서관	-	도서관 자체 규칙에 따름

★★ 강의실 내 거리두기 철저, 식음료 섭취 절대 불가함 ★★

□ 교내 노트북 대여 가능 장소

대여부서	대여조건	세부사항
PC실습센터	1일 5시간, PC실습센터 방문 (02-710-9198/명신관102호) 첫 1회 대여 등록 필요(학생증, 등록비 2,000원)	안내 페이지 바로가기
중앙도서관	1일 1회 최대 4시간, 1층 신한로비 무인대여기	안내 페이지 바로가기

(다음 페이지에 추가시험 안내 이어짐)

5. 추가시험 신청 및 승인 안내

1. 시행근거

학칙 제60조(추가시험)와 학칙시행세칙 제44조(추가시험)에 의거, 부득이한 사유로 정기시험에 응시 못하는 학생에 대해 추가시험 기회 부여, 과제물 대체 또는 다른 시험점수 등을 참작하여 인정점수를 줄 수 있음

2. 추가시험 대상 및 제출서류

결시사유	제출서류		
1. 질병 및 교통사고	진단서, 진료확인서, 의사소견서 中 택일 (시험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하는 의사 소견이 있는 경우만 해당됨)		
2. 친족의 사망	①가족관계증명서 ②사망진단서		
3. 기타	교육실습	교직원운영실에서 발급한 교육실습확인서에 의함	
	조기취업	※출석인정신청서(조기취업생용)을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자에 한함 ①기업체 담당자 확인이 있는 시험 불참사유서 ②증빙서류: 시험결시가 불가피한 증빙(예.출장확인서,행사리플렛 등)	
	그 밖의 공식행사	학부(과)장, 행정부서 기관장 이상의 참석확인증, 정부기관 및 기타기관의 공문 (개인사정은 인정하지 않음)	
4. 코로나19 관련 (21-2 한시적 적용)	코로나19	확진, 자가격리자	자가격리통지서 (대학에 신고한 자에 한함)
		유증상자(발열, 기침, 인후통 등)	대학에 신고
	기타 부득이한 사정인 경우		관련 증빙을 확인하여 담당 교·강사가 추가시험 대상자로 인정 가능함 ※비대면 수업을 수강하는 지방 거주학생

3. 추가시험 신청 및 승인절차

- [학생]신청서 학사팀 제출 > [학사팀]검토 및 승인 > [학생]담당교수 제출 > [담당교수]학사팀 확인 도장이 날인된 서류인지 확인
- 제출서류: 추가시험 응시 요청서와 증빙서류
- 제출처: 학사팀 (행정관 201호)

4. 추가시험 신청자 평가방법

- 결시한 시험에 대하여 추가시험 실시, 레포트 대체 또는 타 평가를 참작한 인정 점수 부여
- 추가시험 신청자의 최종 성적은 B+를 초과할 수 없음(교직이수예정자의 교육실습사유는 제외)
- 승인된 추가시험 응시 요청서를 제출하지 않은 학생이 시험에 응시하지 않았을 경우 해당 평가항목에 대한 점수는 0점 처리함

6. 문의처

구분	담당분야	연락처	사무실
전공강의	전공과목 시험 문의, 부정행위 신고 추가시험 신청 및 승인(전 과목) 대면수업 유고결석(전 과목)	02-710-9015	학사팀 (행정관201)
교양강의	교양과목 시험 문의, 부정행위 신고	02-2077-7511	기초교양대학 교학팀 (행정관201)
스노우보드	스노우보드 퀴즈/과제 기능 활용 문의	02-710-9898	원격교육지원센터 (행파교수회관101)
방역물품	방역물품 배부(손소독제/소독스프레이/마이크 커버) ※기본적으로는 강의실에 비치되어 있으니, 없는 경우에 제보	02-710-9286	총무구매팀 (제2창학 눈꽃광장홀)

//끝//

학사팀담당	학사팀장	결재

※ 굵은 선 안쪽은 학생이 작성

소속학과	학번	성명
결시사유	□질병, 교통사고 □친족사망 □기타() □코로나19관련()	
총 결시기간	2021년 00월 00일 ~ 2021년 00월 00일	

■ 결시교과목

과목명	과목번호-분반	학점	담당교수명	결시일	시험시간

■ 추가시험 안내

1. 학칙 제60조(추가시험)와 학칙시행세칙 제44조(추가시험)에 의거, 부득이한 사유로 정기시험에 응시 못하는 학생에 대해 추가시험 기회 부여, 과제물 대체 또는 다른 시험점수 등을 참작하여 인정점수를 줄 수 있음
2. 추가시험 대상 및 제출서류

결시사유	제출서류		
1. 질병 및 교통사고	진단서, 진료확인서, 의사소견서 중 택일 (시험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하는 의사 소견이 있는 경우만 해당됨)		
2. 친족의 사망	①가족관계증명서 ②사망진단서		
3. 기타	교육실습	교원양성센터에서 발급한 교육실습확인서에 의함	
	조기취업	※출석인정신청서(조기취업생용)을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자에 한함 ①기업체 담당자 확인이 있는 시험 불참사유서 ②증빙서류: 시험결시가 불가피한 증빙(예.출장확인서,행사리플렛 등)	
	그 밖의 공식행사	학부(과)장, 행정부서 기관장 이상의 참석확인증, 정부기관 및 기타기관의 공문 (개인사정은 인정하지 않음)	
4. 코로나19 관련 (21-2 한시적 적용)	코로나19	확진, 자가격리자	자가격리통지서 (대학에 신고한 자에 한함)
		유증상자(발열, 기침, 인후통 등)	대학에 신고
	기타 부득이한 사정인 경우	관련 증빙을 확인하여 담당 교·강사가 추가시험 대상자로 인정 가능함 ※비대면 수업을 수강하는 지방 거주학생	

3. 추가시험 처리절차: [학생]신청서 학사팀 제출 > [학사팀]승인 > [학생]담당교수 제출 > [담당교수]학사팀 확인 도장이 날인된 서류인지 확인
4. 추가시험 신청자 평가방법
 - 결시한 시험에 대하여 추가시험 실시, 레포트 대체 또는 타 평가를 참작한 인정 점수 부여
 - 추가시험 신청자의 최종 성적은 B+를 초과할 수 없음(교직이수예정자의 교육실습사유는 제외)

- (V체크)
- ☐ 상기 내용의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합니다.
- ☐ 위 교과목의 학기말 성적(최종성적)이 B+를 초과할 수 없음을 확인합니다.

위와 같이 추가시험 응시 요청서(결시사유서)를 제출합니다.

2021년 월 일

신청인 성명 _____ (인/서명)

숙명여자대학교 학사팀장 귀하

학사팀 확인	2021년 월 일	담당자:	(인)
--------	-----------	------	-----